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8. 4. 4.
사회건설위원회

1. 審 査 經 過

- 가. 제출일자 : 2008년 3월 21일
-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 다. 회부일자 : 2008년 3월 28일
- 라. 상정일자 : 제135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2008년 3월 31일) 상정의결

2. 提 案 說 明 의 要 旨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가. 개 정 이 유

- 교통불편신고 처리기간을 2~3개월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는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고객의 불만이 줄어들지 않음에 따라 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방안으로 서울특별시에서 「교통불편신고 개선처리지침」(도로행정담당관-4500)이 시달됨에 따라 이에 맞게 교통불편신고 처리기간을 단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 요 내 용

- 서울특별시에서 직접 조사 후, 이첩된 사항은 심의의결한 것으로 같음함(안 제2조 제1항)
- 사업자(행위자)의 청문(진술)기회 부여시 행위를 인정하는 경우, 사실 조사하여 법령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교통불편 민원신고 요건이 불비한 경우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함(안 제2조 제2항)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專門委員 : 이남식)

-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교통불편신고 처리기간을 30일 이내로 단축하고자 하는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고객의 불만이 줄어들지 않음에 따라 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방안으로 서울특별시에서 「교통불편신고 개선처리지침」(도로행정담당관 - 4500)이 시달됨에 따라 이에 맞게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 중 제1항의 단서조항 추가와 제2항을 신설(서울특별시에서 직접조사 이첩사항은 심의의결로 같음하고 행위자가 행위를 인정한 경우와 법령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교통민원 신고요건 불비의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審査結課 : 原案可決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131 호
----------	---------

제출년월일 : 2008. 3.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교통불편신고 처리기간을 2~3개월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는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고객의 불만이 줄어들지 않음에 따라 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방안으로 서울특별시에서 “교통불편신고 처리개선계획”(시장방침제42호)을 수립하고 “교통불편신고 개선처리지침”(도로행정담당관-4500)이 통보됨에 따라 이에 교통불편신고 처리기간을 단축하고자 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심의기능 중 “서울특별시에서 직접 조사 후 이첩된 사항은 심의·의결한 것으로 같음한다.”내용을 추가 (안 제2조제1항)

나. 위원회의 심사대상 제외 규정 신설 (안 제2조제2항)

② 다음 각호의 사항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사업자(행위자)의 청문(진술)기회 부여 시 행위를 인정하는 경우
2. 사실 조사 하여 법령위반행위가 확인 될 경우
3. 교통불편 민원 신고요건의 불비한 경우

다. 법령 띄어쓰기 기준 및 문맥에 맞지 않는 용어를 정비(안 제1조, 제3조제2항 제1호 및 제10조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권고·건의·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 : 필요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에서 직접 조사 후, 이첩된 사항은 심의·의결한 것으로 같음 한다.”로 한다.

제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 한다.

1. 사업자(행위자)의 청문(진술)기회 부여 시 행위를 인정 하는 경우
2. 사실 조사 하여 법령 위반행위가 확인 될 경우
3. 교통불편 민원 신고 요건의 불비한 경우

제3조제2항제1호 중 “구청장” 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서무”를 “사무”로 한다.

조와 조 제목은 붙여 쓰고, 항의 표시와 본문 간에는 띄어 쓴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0조(간사)① (생략)

② (생략)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교통민원심의 각 안건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실에 입각하여 조사 상정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사무

...